

방재기술 평가제도 소개

■ 방재신기술이란?

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,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말한다.

■ 방재기술평가 제도의 목적

- 국가에서 자연재해저감과 관련된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개인, 단체, 정부기관 등은 신기술을 믿고 사용
- 기술 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 및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,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
- ※ 소방방재청에서 방재신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기술 수요자에 대한 신뢰성 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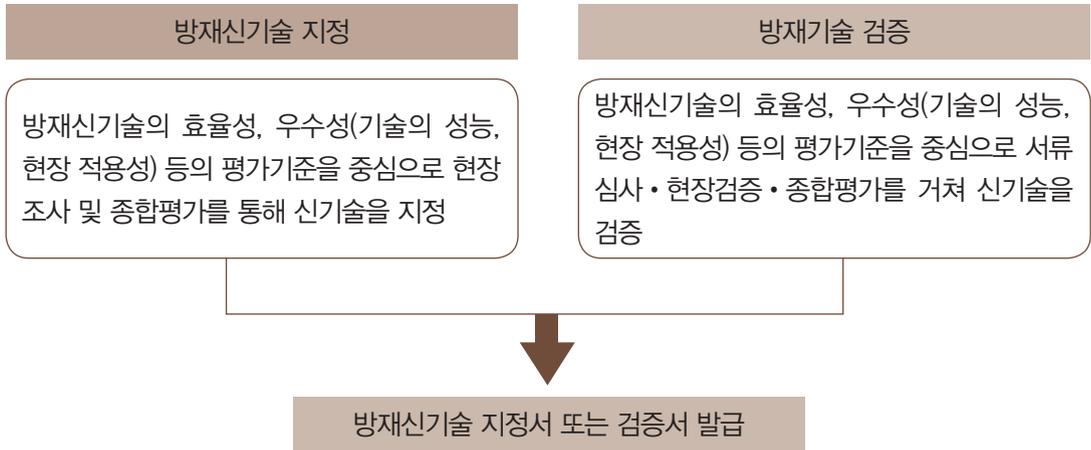
■ 추진경과

- 자연재해대책법 전면 개정 시 신기술 평가제도 도입('05. 1.27)
-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전문기관 지정('06. 6.8)
 - ※ 근거 :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2항
- “자연재해저감신기술 운영매뉴얼” 발간('06. 11.26)
- 자연재해저감기술 신기술 마크 특허등록('07. 3.20)
- 신기술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(시행령 개정 '07. 7.2)
 -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확인 → 지정, 유효기간 → 보호기간으로 변경
- 신기술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(계약예규 개정 '12. 7.9)
 - 조달청 PQ심사시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에 대해 점수부여
(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은 12. 8. 9.자부터 시행)
- 자연재해저감신기술→방재신기술로 명칭 변경(12. 8.22 개정)
- 지정신기술 개발 활용실적 등록제도 시행,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계(13.1.1 시행)
- 방재신기술 'NET' 마크통합 (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14.01.22)

■ 신청대상 및 범위

- 국내에서 방재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개인 및 단체로 방재공법에 관련된 기술
 - ※ 국내 최초신기술 입증을 위한 기본근거자료로 특허 제출 요망

■ 제도의 종류



■ 평가의 절차

- 신기술지정 : ▶ 접수 → 공고 → 현장조사(현장 적용성 등 평가신청서 내용과 일치여부) → 서류심사(전문기관) → 지정 → 우선활용권고(지자체 등)
- 기술검증 : ▶ 접수 → 공고 → 현장조사 → 서류심사(전문기관) → 현장평가(현장시설 시험·분석 등 성능 평가) → 종합평가 → 검증 → 우선활용권고(지자체 등)

■ 지정신기술의 지원사항

- ‘NET’(신기술 통합인증 표시)마크 사용(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14.01.22)
-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제도 시행 (지방계약법 제20,22,25조 개정 13.11.20)
- 조달청, PQ심사시 자연재해저감신기술(방재신기술)의 개발활용실적에 대해 가점 부여 실시(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은 2012.8.9.자부터 시행)
-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(우수조달물품의 지정)에 따른 조달우수제품선정 우대 (2012년 1월 1일부)
- 소방방재청에서는 방재신기술로 지정고시 된 기술에 대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으

로 하여금 방재신기술을 우선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권고(시행령 51조)

- 기술개발자에게 방재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, 제도적으로 방재분야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지원(법61조)
- 방재기술 평가, 시범사업, 실용화 하려는 경우 자금우대 지원(법60조 4항)
- 보조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, 신기술 설치 후, 성공적으로 판단 시 설치비 지원 장려금제 시행(시행령 제46조, 시행규칙 제22조 1항)

■ 신기술 접수,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, 제출서류, 비용

-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접수
 - 평가진행은 평가전문기관(한국방재협회)에서 수행
- 방재신기술 지정 및 검증에 소요되는 기간(총90일 소요, 평가신청서보완기간, 관보공고기간 등 제외)
- 신청서, 선행기술조사보고서와 신청기술에 따른 기타 요구자료(운영매뉴얼참조)
- 신기술 지정 및 검증 평가비용 – 건당 3백만원(평가심사비 및 현장조사비 포함)
 - ※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위원들의 심사수당 및 여비는 신청자가 부담

■ 심사기준

인증종류 항목		지정(검증)	보호기간 연장
신규성		• 새로운 기술이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부분을 개량한 기술	-
우수성	기술의 성능	• 기술의 효용성 • 완성도 • 중요도 • 발전성이 있는 기술	• 기술의 효용성 • 완성도 • 중요도 • 발전성이 있는 기술
	현장 적용성	• 기존기술과 비교한 경제성 • 안정성 • 시공성유지 관리 편의성 • 법령 위배사항	• 기존기술과 비교한 경제성 • 안정성 • 시공성유지 관리 편의성 • 법령 위배사항
활용실적여부		-	• 현장활용실적
현장평가여부		(검증시)	-

※ 심사의결 : 제적의원 2분의 1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 하여야 신기술로 인정.

■ 신기술표지

-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, 포장용지의 크기·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으며,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※ “Ne”와 “T”의 외곽선, “신기술인증”, “New Excellent Technology”는 검정색, “T”의 내부는 검정색 음영 30%로 하고, 태극은 전자청색(DIC No. 142)으로 한다.

